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-982호

- 2024년도 제2회 국가기록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-
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2024년도 제2회 국가기록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
국 가 기 록 원 장

1. 최종합격자 : 4명

구분	직급	분야	최종합격자 명단	
			인원	응시번호
연구직	공업연구사(화학)	기록물 보존관리	1명	**2401002**
전문임기제	다급	시청각기록 디지털화 및 시스템 운용	1명	**2402003**
	다급	종이기록물 복원	1명	**2403001**
	라급	기록물 복원 및 복제	1명	**2404002**

2.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
나. 등록기간 : 2024. 7. 1.(월) ~ 7. 5.(금)

다. 등록방법 : 아래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제출

※ ㉾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2동 403호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인사서무팀 채용담당자 앞

라. 제출서류

① 신원진술서 2부. < 서식 1 >

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. < 서식 2 >

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 < 서식 3 >

④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 < 서식 4 >

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< 서식 5 >

⑥ 기본증명서(상세) 2부. ※ 본인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기재된 것으로 발급

⑦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1부. ※ 본인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기재된 것으로 발급

⑧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.

⑨ 최근 6개월 이내 탈모한 상반신 사진 반명함판(3×4) 3매.

3. 유의사항 안내

가. **정해진 기한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임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 포기서를 작성(서식6)하여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채용후보자 등록,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.

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(조회)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☎ 문의 :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(인사) 042-481-6208 / (채용) 6209

< 서식 1 >

(3쪽 중 제1쪽)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, 각 '□'칸에는 해당 사항에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 명	(한글)	(한자)	주민등록번호	-	【 사 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
주민등록지					
실거주지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연락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

*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.
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 및 직 책	거 주 지
부모 · 배우자 · 자녀					
	*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.				
배우자					
부모					

국 적	본 인	가 족			
		배우자	자녀(성명)	자녀(성명)	자녀(성명)
	□ 대한민국 □ 복수국적 □ 외국국적	□ 대한민국 □ 복수국적 □ 외국국적	□ 대한민국 □ 복수국적 □ 외국국적	□ 대한민국 □ 복수국적 □ 외국국적	□ 대한민국 □ 복수국적 □ 외국국적
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	*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				

재 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
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☐ 없음	단 체 명			기 간	직 책
	☐ 있음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					. . ~ . .	
병 역	본 인	군 종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				. . ~ . .	
	자녀(성명)				. . ~ . .	
	자녀(성명)				. . ~ . .	
	자녀(성명)				. . ~ . .	

학 력	학 교 명	기 간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*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, '학위'란은 (전문)학사·석사·박사 또는 졸업·중퇴·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.				

경 력 · 겸직 사항	기관 또는 업체명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
		. . ~ . .		
		. . ~ . .		
		. . ~ . .		
		. . ~ . .		
자격·면허				

해외 거주 이력	거주 국가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
		. . ~ . .		
		. . ~ . .		

북한 거주 친족	관계	성 명	직업·직책	생년 및 거주지	지득 경위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**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**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성명 인(서명 또는 날인)

210mm×297mm 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국가정보원, 국방부, 경찰청은「보안업무규정」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**개인정보**, **민감정보**, **고유식별정보**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신원조사 기관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제출한 신원진술서는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 목	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지, 실거주지, 직장, 연락처, 가족 관계, 국적, 재산, 병역, 학력, 경력, 자격·면허, 해외거주 이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, 그 내용에 관하여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**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**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**동의함 []** **동의하지 않음 []**
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

항 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, 그 내용에 관하여 **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**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**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**동의함 []** **동의하지 않음 []**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 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「보안업무규정」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]**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(필요시) 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:

210mm×297mm 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< 서식 2 > 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정보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
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“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” 라고 적습니다.
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※ 응시자의 질환이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

전문의 소견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시험실시기관		③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② 응시직명		④ 주민등록번호	-	

응시자의 질환명	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	※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,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_____전문의 (서명 또는 인)

※ 소속 병원명 : (☏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
-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,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을 적어야 합니다.

[전문의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위 소견서는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 -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3호서식]

(앞쪽)

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 직명	④ 응시 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-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(재신체검사 결과 등)	

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분야 전문의) (서명 또는 인)

신체검사 판정결과	[]합 격 []불 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3.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,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” 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
3. “신체검사 판정결과” 란에는 신체검사서(별지 제1호서식)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, 불합격,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.
 가. 합격 사유(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) 기재의 예
 -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
 -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,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,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

 ※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,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.

 다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< 서식 3 >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■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▪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▪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및 가족 동의 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▪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안부·인사처) ▪ 주민·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 ▪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▪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▪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▪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▪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	▪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안부) ▪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▪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▪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▪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▪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< 서식 4 > **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**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
(채용, 공공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-----있음 □ 없음 □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

※ **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**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**(예시)**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----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4-1, 4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----해당 □ 비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 원 자 (서명)

< 서식 5 >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경찰청(소속기관 포함)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원조사, 결격사유・공무원시험부정행위・범죄경력유무 조회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・초본	6	고등학교졸업증명서
2	자동차등록원부(갑)	7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3	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		
4	병적증명서		
5	검정고시합격증명서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(필요시 기재사항)

(■주민등록 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 : _____ - _____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< 서식 6 >

임용 포기서

○ 시 험 명 :

○ 응시직급 :

○ 응시분야 :

○ 응시번호 :

○ 성　　명 :

○ 생년월일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화번호 :

위 본인은 (　　)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성 명　　(인)

국가기록원장 귀중